

음식물쓰레기협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'99년 11월 준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 협기성 퇴비화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처리시설 운전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 음식물쓰레기 협기성 퇴비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
- 수탁기관은 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
-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본 동의안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법령상 타당함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

나. 내용타당성

- 집행부의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 시설을 시에서 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운영경비 및 운영인력을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음.

구 분	시직영시	민간위탁시	비 고(증감)
운 영 인 력	8인	6인	2인 감소
운영경비 총계	371,580,000원	305,610,000원	65,970,000원 절감

- 위의 표와 같이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되므로 본 동의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. 그리고, 위탁 업자 선정의 경우도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시의원들이 참여함으로 위탁업자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.

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을 두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원,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지방의회의원의 수는 2인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- 다만, 시설위탁관리비로 약3억원이 예상되고 있는데, 2000년도 본예산에는 1억5천만원만 계상되어 있어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추경예산의 성질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됨.